

소 장

원 고 윤 수 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김 영 수

피 고 동두천시장

생계급여변경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9. 8. 20.자로 한 생계급여 감액변경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지위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고 피고는 법률상의 보장기관으로 2009. 8. 20.자로 원고에 대한 생계급여를 기왕의 매월 374,060원에서 매월 46,030원으로 감액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청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1) 원고는 2001. 추락사고를 당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하지 복합골절 및 골수염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관계로 2001. 4.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라 함)상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2003.5.경부터 피고(동두천시; 이하 피고와 동두천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표시함)로부터 매월 생계급여 조로 월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 (2) 원고는 처와는 2003년경 이혼하여 그 무렵부터 주소지에서 홀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자녀로는 2명의 딸이 있는데 현재 출가한 큰 딸인 소외 윤J는 일용노무자인 큰 사위 윤S과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작은 딸인 소외 윤A는 일용노무자인 소외 김H와 결혼하여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서 각자 생활이 어려워 원고를 부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딸 2명과 사위들이 있는 수급자로서 피고로부터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로서는 출가한 딸들이나 사위에게 아무런 부양비도 지급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피고가 법령상의 1인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비에 턱없이 부족한 매월 3-5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2009. 2. 20.자로 급여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2009. 4월분부터 7월분까지 매월 생계급여를 3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09. 8. 20.자로 사위 2명이 부담하는 부양비가 증가되어 원고의 생계비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매월 374,060원에서 매월 46,030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감액변경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가 2009. 10. 19.자로 피고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갑제 1호증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통보서(피고, 2009. 8. 14.자), 갑제2호증 가족관계부(원고와 2자녀 관련)]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갑제1호증 급여변경통보서 상의 급여변경안내 란을 보면 "부양비 증가로 인한 생계비 감소"를 본건 처분의 사유로 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는 2명의 사위의 각각의 실제소득에서 사위 세대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뺀 금액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도 정한 부양비 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각기 부양비로 정기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처리(이것을 실무상으로 '간주부양비'로 명명 사용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간주부양비'라 함)하여 이와 같은 간주부양비를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실제소득으로 판정한 결과 원고에게 실제소득이 없으면 지

급될 월37만원에서 이와 같은 사위 2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처리한 간주부양비의 합계금액을 공제하여 생계급여액을 매월 46,030원으로 감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 같은 급여변경 처분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인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상의 부양비 부과액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원고의 사위 부부들이 모두 '기초법'상의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로 그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는 것 인양 간주하여 생계급여를 감액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함이 분명하므로 모두 취소되고 원고에게 공제되지 않은 생계급여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이하 생략)
 2. 사업소득(이하 생략)

3. 재산소득(이하 생략)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제4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일 것
-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3) 기초법 상의 수급권자의 자격 기준

기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법상의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법 제2조 제8호에서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법제2조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평가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부분은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것임은 법률의 문면상 분명한 것입니다.

(4)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의 규정의 검토 (=무효)

(가) 문리해석상 '실제소득'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무효임이 분명합니다.

기초법 제2조 제9호 후문 전단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실제소득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실제로 얻은 소득 산출이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만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평가액으로 하도록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제소득의 범위'는 1) 무엇보다도 '수급권자가 실제로 올린 소득'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2)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한 소득을 규정하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위임한 것이지, 나아가, 실제로 얻은 소득이 아닌데도 마치 타인으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는 것처럼 의제하는 가상 소득을 규정할 재량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위와 같기에 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항들이 모두 실제 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호의 가목과 다목의 규정 역시도 모두 '이전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규정 및 제2항에서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광범위한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기초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 하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충급여의 방식으로 의료 및 생계급여와 그 밖의 법률상의 급여를 하여 국민들의 경우 누구든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고, 여기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은 1촌 이내의 부양의 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을 실정법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기초법상의 급여는 재량성 사회보장 급여가 아니라 수급권자의 권리성 급여인 것입니다.[갑제3호증의 2 중 부록I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연혁 참조(특히 P290 표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제1항 각 호 각목의 이전소득을 포함한 '실제 소득'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소득인정액'이나 '소득평가액'이라는 법률상의 개념 자체에서 유래하는 본질적인 내재적 한계로서의 '소득'의 범주를 일탈할 뿐 아니라 '실제소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위임하고 있는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소득'이 아닌 것을 '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헌,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자신이 사위 부부에게서 받지도 않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간주부양비'형태의 이전소득으로 법령에 의하여 의제당하여 동액 상당의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위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법원의 위헌·위법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나) 이 사건 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국민들의 기초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으로서의 "소득인정액"- 그 중에서도 "소득평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소득'도 아니고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을 '소득'으로 포함하는 행정입법 조항을 뒤서 이를 기초법상의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게 될 경우 수급권자의 수급자격의 존부나 범위- 즉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법률이 아닌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인 행정입법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정입법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기초법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헌법상의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으로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5)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지침 중 부양비부과 규정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조항이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은 '소득'에 관한 조항이나 부양의무자에게 피부양자인 수급권자에 대하여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며 그러한 행정입법권한이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바도 없습니다.

부양능력없는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초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은 기초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 판정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제정된 조항임은 문면상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위임된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받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에서 동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의 범위 내지 기준"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능력없음"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일 뿐이지, 동 금액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로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전혀 아닙니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 지침상의 '부양비'분과 및 수급권자에 대한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지침')의 위법성

1) 관련 규정의 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이라는 보장기관에 하달하는 지침을 제정, 배포하고 있는데[갑제3호증의1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표지 - 2 내용(발췌본) (보건복지가족부 제작 발간물임)]동 지침 중 제1편 II. 수급자선정기준 3.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면

전문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이라고 명시하고(P14. 상단 박스 부분) 나.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 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이라고 하고, 그 중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불능·기피 등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지침 P15)

여기서 위 지침에서는 "(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137쪽보장비용징수 참조) (위 지침 P21참조)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나)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부양비로 부과

-부양비=(부양의무자 실제소득-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30%)×15%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이거나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금융재산 산정시는 생활준비금(300만원)과 금융부채(담보·신용·약관대출 등)를 공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와 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한 후 동 지침 제2편 조사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라. 기타 소득 (2) 부양비를 규정하여 지침 제1편 수급자 선정 II. 수급자선정기준 3. 수급자 선정기준. 나.부양 의무자 기준 중에서 정한 바와 같은 '부양비'를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지침 P68참조]

2) '이 사건 지침'의 성격(=법규명령)

이와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지침은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 등에 따라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와 같은 지침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수급권자의 수급권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참고 대법원 1996. 4.12. 선고 95누7727호 판결]

3) '이 사건 지침'의 위법성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위임된 행정입법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음"으로 판정받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서 '부양능력유무의 판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빌미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수급권자가 받지도 않은 금액을 '이전소득'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수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지도 않는 '부양능력판정기준'상 '부양능력없음'으로 판정하는 전제 조건인 기준 금액으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불과한 부양비를 '이전소득'으로 규정하여 이를 '급여액 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고,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부양비 지급'(=간주부양비)한 것으로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한

것임이 증거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지침 역시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며, 나아가 원고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위 판결 참조]

(6) 소 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지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효인 규정들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겠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기초법'이나 동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바 없는 사항인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지침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하여 이른 바 '간주부양비'제도를 자의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수 많은 빈곤층들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수 많은 수급자들 역시 대부분의 생계급여를 감액 당하여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인한 다수 빈곤층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의 헌법 및 기초법 상의 사회보장수급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 및 이 사건 지침의 폐지는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참고자료 보도자료(참여연대)]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조항 및 지침의 효력상실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강제1호증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통보서(피고, 2009. 8. 14.자)
1. 강제2호증 가족관계부(원고와 2자녀 관련)
1. 강제3호증의1 200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표지
1. " 2 내용(발췌본) (보건복지가족부 제작 발간물임)

참 고 자 료

1. 대법원 1996.4.12.선고 95누7727호 판결
1. 보도자료 (참여연대 2009.9.21.자)

첨 부 서 류

- | | |
|-----------|-----|
| 1. 소장부분 | 1통 |
| 1. 위 입증방법 | 각1통 |
| 1. 위임장 | |
| 1. 납부서 | |

2009. 11. .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변호사 김 영 수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

귀중

소 장

원 고 윤 수 만
피 고 동두천시장

송달료 60,400원

인 지 95,000원

2009. 11.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찬 진

김 영 수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

귀중